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중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88
----------	-------

발의연월일 : 2025. 9. 15.

발 의 자 : 진중오·서천호·김상훈
고동진·서지영·김승수
김용태·김예지·박수민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건은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유괴 범죄에 대한 대응은 사건 발생 이후의 처벌 등 사후적 조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피해자가 저항력이 약하고 보호자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교육 차원의 대응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학교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과 관련된 내용이 포

함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0조의3제1항 중 “제23조제2항·제3항”을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u>
<u>④ (생략)</u>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u>제23조제2항·제3항</u> ,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 ----- ----- ----- ----- ----- ----- ----- ----- ----- -- <u>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u>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